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 2015.12.1.] [법률 제13526호, 2015.12.1., 일부개정]

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기준 및 검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가축분뇨를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 위탁사육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을 배출시설의 종류별로 2018년 3월 24일 또는 2019년 3월 24일까지 유예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접지방자치단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한편, 그 밖에 가축분뇨 관련 영업 허가에 관한 결격사유 해소 후 다시 2년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한규정을 개선하는 등 그동안 법 집행과정 중 미비 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 법률 제1352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 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설치하려는 자”를 각각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퇴비액비화기준)”을 “(퇴비액비화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원화시설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이하 “고체연료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가축분뇨를 정화하고, 퇴비액비화기준 또는 공정규격에 맞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할”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게 가축분뇨를 처리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또는 「비료관리법」을 적용받는 퇴비 또는 액비는 비료공정규격
3.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

제15조제5항 및 제6항 중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을 각각 “제4항 각 호의 기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수질 또는 퇴비·액비”를 “수질,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①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최초로 사용하려는 경우
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을 1년 이상 중지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 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공급자
 - 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종류
- ②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버리는 행위”를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중 “수질 또는 퇴비·액비의”를 각각 “수질, 퇴비·액비의 성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을 “방류수수질기준, 퇴비액비화기준, 공정규격 또는 고체연료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방류수의 수질 또는 퇴비·액비”를 “방류수의 수질,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

료”로 한다.

제25조제9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행위

제31조제4호 중 “제32조”를 “제32조(같은 조 제2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퇴비액비화기준 또는 공정규격 의”를 “퇴비액비화기준, 공정규격 또는 고체연료기준의”로, “수질 또는 퇴비 · 액비 의”를 “수질, 퇴비 · 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로 한다.

제48조제4호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50조제5호 중 “신고를 한 자로서”를 “신고를 한 자 또는 퇴비 · 액비를 살포한 자로서”로 한다.

제51조제2호 중 “신고를 한 자 또는 재활용신고자”를 “신고를 한 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퇴비 · 액비를 살포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퇴비 · 액비를 살포하는 자

제53조제2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퇴비 · 액비”를 “퇴비 · 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한다.

2.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또는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한 자
3.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같은 법률 부칙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탁사육자에 대한 별칙 적용에 관한 특례)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을 사용하여 위탁사육하는 자는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 2019년 3월 24일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 2018년 3월 24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2, 제8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 제1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5조의2, 제17조제1항제6호, 제18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9항제3호, 제41조제2항, 제5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및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016년 3월 24일 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법 시행 후 2017년 3월 24일까지 제12조의2의 기준에 맞게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